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2. 18 선고 2023가단12408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아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영갑

변론 종결2024. 11. 27.

판결 선고2024. 12. 18.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21. 9.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63,6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6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가 소외 C와 2015. 5. 12. 혼인을 하고 2021. 7. 5.경부터 그와 별거하다가 2022. 4. 21. 그를 상대로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2드단11729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3. 11. 16.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2. 4. 30.부터 2023. 11.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과 재산분할로 4,3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등의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2023. 12. 2. 확정된 사실, 피고는 C의 모친인 사실, 한편 C는 2021. 9. 14.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아산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돈 중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수리비용, 관리비 등을 제한 나머지 117,361,825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그 무렵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 7, 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은 증여에 해당하고 이는 C의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그 중 6,360만 원에 대한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C가 2021. 7. 11.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중 대출금 등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할 것임을 원고가 위 당시부터 알고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제척기간인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는바(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1186, 2011다71193(병합) 판결 등 참조), 을 제6호증의 기재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장차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할 것임을 원고가 2021. 7. 11. 무렵 알게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는데다, 가령 C의 그러한 계획을 원고가 위 무렵 알았다고 한들 이는 이 사건 금원의 지급 전이어서 원고가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58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갑 제1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21. 7. 5.경부터 C와 별거를 하다가 2022. 4. 21.경에 'C가 2019. 1. 18. 원고에게 두꺼운 책을 던져 늑골골절상을 가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 등'을 이혼사유로 주장하며 재판상이혼청구를 하여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3. 11. 16. 원고의 위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선행판결이 선고되어 2023. 12. 2. 확정되었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의 피고에 대한 지급 당시 원고와 C의 이혼사유는 이미 존재하였고, 따라서 그 무렵 그에 따른 원고의 C에 대한 위자료 및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원고가 이혼청구를 하여 선행판결을 받음에 따라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중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원금 합계 6,360만 원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성 및 사해의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이 증여가 아닌 변제라고 주장한 바 있고,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는바(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가 2015. 3. 7.경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2억 1,700만 원으로 매수함에 있어서 그 중 1억 4,400만 원은 은행대출을 받고 나머지 7,300만 원은 피고가 이를 마련하였다고 보이는데(원고도 이를 다투지 않고 있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C에게 위 7,3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를 구매하여 주었다는 것이고, 다만 그 매수자금을 피고가 마련하였음에 따라 그 매도대금 중에서 담보대출금 등을 제하고도 남는 부분은 피고에게 주기로 C와 합의가 되어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고 그로써 피고의 주유소 관련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은 변제가 아닌 증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가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함에 따라 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금원의 증여는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이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피고가 갖는 것에 관하여 원고가 동의를 하였고, 그 무렵에는 C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등 채권의 성립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를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라 항변한 것으로 선행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을 피고가 갖는 것에 관하여 원고가 동의를 하였다거나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C가 모자관계인데다 C는 2023. 10. 12. 원고에 대한 특수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기 전까지 피고 부부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근무하며 그에 붙어 있는 집에서 거주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는 다른 직장을 가진 적이 없고 피고가 지급하는 급여 및 생활비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생활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C는 싸우는 일이 종종 있어 싸우거나 술을 마시고 손자를 방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 집으로 이사하라고 피고가 권유함에 따라 원고와 C가 2021. 4.경 위 집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2021. 7. 5.경 원고가 집을 나갔고 이에 피고가 2021. 7.말경 원고에게 원고의 짐 정리와 관련하여 연락을 한 바가 있다는 것인 점 등을 합쳐 보면, 피고는 위 2021. 7.말경에는 C와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과 그에 따라 C가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았고, 또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 무렵 C가 그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됨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결국 이 사건 금원의 증여는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범위인 6,36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6,3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 의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누리